

평생교육원 장학금 지급 내규

- 제정일 : 2015. 3. 1.
- 개정일 : 2015. 7. 7.
- 개정일 : 2017. 3. 1.
- 개정일 : 2017. 9. 1.
- 개정일 : 2018. 3. 1.
- 개정일 : 2019. 6.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나사렛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의 설치목적에 달성하고 (제대로 공부하는 교육기관을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삭제) 학비감면과 장학금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의 학비감면과 장학생 선발에 관한 기준,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및 기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내규에 따른다.

제2장 장학위원회

제3조(구성) 교육원의 장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은 평생교육원장이 지명하는 교직원 또는 학점은행제 전공 주임교수로 한다.
2.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이 되며, 회무처리를 위하여 해당 부서의 직원으로 간사 1명을 둔다.
3.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제4조(기능) 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장학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 및 지급 기준액 심의
3.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

제3장 장학금의 종류

제1절 학점은행제

제5조(구분) 장학금은 교육원 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지급액 등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지급대상) 본 교육원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장학금 수혜대상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2.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손) 자녀
3. 학생 활동에 모범적인 자
4. 협약기관 임직원
5. 기타 학점은행제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선발 및 장학금액) ①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 금액은 별표1과 같다.

② 동점자의 경우 이수 과목 수, 취득학점, 총점 합계의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제8조(이수학점) 장학생 선발의 최소 이수 학점은 직전 학기 15학점 이상, 평균점수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으로 한다. 단, 별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자격제한) ① 장학생 선발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하지 아니한다.

1. 직전 학기 면학 풍토 구성에 위반하는 자
2. 학사과정 105학점 이상, 전문학사 60학점 이상 수강한 자

② 장학금 지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휴학자(미등록자)
2. 해당 학기 면학 풍토 구성에 위반하는 자
3.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지급방법) ① 장학금 지급 방법은 장학금 종류의 성격에 따라 수업료 납부 후 장학금 지급과 수업료에서 장학금 감면처리 방식을 병행한다.(2018.3.1.)

② 별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방법을 준수한다.

③ 이중수혜가 발생할 시 장학금액이 높은 것을 수혜하고 장학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손) 자녀 장학금
2. 성적우수장학금

제2절 일반 평생교육과정 등

제11조(구분) 학비감면은 교육원 학비감면으로 구분하며, 학비감면의 종류,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은 별표2와 같다.

제12조(자격제한) 학비감면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우리 교육원에서 학습 중 면학분위기를 해친 자
2. 우리 교육원에 대하여 위해를 끼치거나 명예에 손상을 가한 자
3. 허위문서를 제출한 자

제13조(지급방법) ① 학비감면은 수강하는 당해 과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이중수혜가 발생할 시 감면금액이 가장 높은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감면) ① 정기 시즌 외에 개설되는 일반과정, 최고위과정을 포함한 특별과정, 외부기관과의 협력과정, 위·수탁 과정 등은 당해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학비감면의 대상, 지급기준 등을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경과조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별도의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 지급 사유가 발행했을 때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의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1] 학점은행제 장학금(학비감면) 지급 기준

명칭	대상자	장학금액	선발 기준 및 제한 사항					비고
보훈 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손)자녀	100(%)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100% 본교지원					본인, 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손)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50(%)	-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50%국가보조 50%본교지원 - 선발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직계(손)자녀는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 본인인 경우 성적 제한 없음)					
성적 장학금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	본 학기 등록 학습과목 총 수강료 20(%)	전공별 학습자 (대상인원)	15~29명	30~44명	45~59명	60명 이상	
			선발인원	1명	2명	3명	4명	
			- 각 전공의 장학 지급 대상 인원에 따라 달라짐					
봉사 장학금	임원 학습자	수업료의 20(%)	- 대상자 : 각 전공 대표 - 등록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원칙 단, 등록인원 10명 미만 전공의 경우에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원장이 승인하여 지급 가능					
	추천 학습자	30(%)	- 신입생 10명 이상을 추천한 학습자					등록 인원에 한함
		20(%)	- 신입생 5~9명을 추천한 학습자					
10(%)	- 신입생 3~4명을 추천한 학습자							
공헌 장학금	주임교수 추천자	20(%)	- 학교와 해당 전공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서 주임교수가 추천하는 자(전공별 1명. 단,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장이 승인하여 인원 추가 가능)					공헌장학금 장학생 추천서
가족 장학금	직계가족 2인 이상 등록자	수업료의 20(%)	- 당해 학기에 직계가족 각각 5과목 이상 등록 시					가족관계 증명서
	교·강사 직계가족인자	수업료의 50(%)	- 당해 학기 교·강사의 직계가족인 자(교·강사의 친형제·자매 포함)					
취약계층 장학금	취약계층	수업료의 20(%)	-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자,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증빙서류 제출 장학금 비율 상향조정
협약 장학금	천안시 공무원 협약기관	수업료의 34(%)	- 천안시 공무원(산하기관 포함)					재직증명서
	천안시 자원봉사자	수업료의 20(%)	- 천안시 우수자원봉사자(100시간 이상)					1365자원봉사활동 확인서(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발급)
	상기 이외 협약기관	수업료의 20(%)	학점은행제 협약체결 기관 종사자, 회원					재직증명서 또는 회원증
외부지정 장학금	학점은행제 재학생	기부금액 범위 내	- 기부자가 지정한 학생 - 지정권한은 기부자에 의해 위임된 자(기부 추천인)가 대행할 수 있음					이수학점 및 성적 제한없음

※ 현장실습 학습과정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표2] 평생교육과정 장학금(학비감면) 지급 기준

명칭	수혜자	감면액	제출 서류
학비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학기 강좌 2개 이상 수강자 - 동일학기 가족 2인 이상 수강자 - 3학기 이상 연속 수강자 - 본교 졸업생인 수강자 (대학원 포함) - 본교 학점은행제 졸업자 <84학점, 타전공 48학점 이상 취득자> - 본교 교직원 가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학기 이상 연속 수강자 - 나사렛교단 목회자 (목사, 부교역자) -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 학교법인 나사렛학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학생 - 10학기 이상 연속 수강자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교직원 	50%	

* 단, 1:1 개인 레슨과정 학습비 감면 대상에서 제외 함.